

알티어로 광안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00-0366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6.05.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6.05(금)	26.06.15(월)	26.06.16(화)	26.06.17(수)	26.06.23(화)	26.06.27(토)~ 26.07.04(토)	26.07.06(월)~ 26.07.08(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처족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촉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알티어로광안.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동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세액	사업주체 부담액	분양계약자 부담액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17만 5천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05.(금)**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거주자가(2025.06.05. 이전부터 계속 거주)**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6.15(월)	26.06.16(화)	26.06.17(수)	26.06.23(화)	26.06.27(토)~ 26.07.04(토)	26.07.06(월)~ 26.07.08(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50-2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6.23.)로부터 6개월	

■ 인지세 관련 안내

-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 등 취급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질서 교란 금지(「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 주체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 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축과 - 29020호(2026. 06. 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25~27층 4개동 총 3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9세대(다자녀가구 38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2026-000148	01	151.7340	151	151.7340	40.9196	192.6536	128.4115	321.0650	76.2416	72	8	2	10	62	3
	02	151.7340P	151P	151.7340	40.9196	192.6536	128.4115	321.0650	76.2416	3	0	0	0	3	0
	03	153.2934	153	153.2934	39.7184	193.0118	129.7312	322.7430	77.0252	66	7	2	9	57	3
	04	153.2934P	153P	153.2934	39.7184	193.0118	129.7312	322.7430	77.0252	3	0	0	0	3	0
	05	154.8504	154	154.8504	41.0537	195.9041	131.0488	326.9529	77.8076	92	10	3	13	79	4
	06	154.8504P	154P	154.8504	41.0537	195.9041	131.0488	326.9529	77.8076	4	0	0	0	4	0
	07	160.2818	160	160.2818	44.4805	204.7623	135.6454	340.4076	80.5367	95	10	3	13	82	4
	08	160.2818P	160P	160.2818	44.4805	204.7623	135.6454	340.4076	80.5367	4	0	0	0	4	0
	09	191.4609	191	191.4609	49.5762	241.0371	162.0321	403.0692	96.2033	26	3	1	4	22	1
	10	191.4609P	191P	191.4609	49.5762	241.0371	162.0321	403.0692	96.2033	1	0	0	0	1	0
합 계										366	38	11	49	317	15

- 각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소수점 이하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오차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신청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151	151P	153	153P	154	154P	160	160P	191	191P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	0	7	0	10	0	10	0	3	0	3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0	2	0	3	0	3	0	1	0	11
합 계	10	0	9	0	13	0	13	0	4	0	4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151.7340	151.7340P	153.2934	153.2934P	154.8504	154.8504P	160.2818	160.2818P	191.4609	191.4609P
약식표기	151	151P	153	153P	154	154P	160	160P	191	191P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VAT 포함)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구분 (라인)	층구분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입주 지정기간
										2027.01.25.	2027.05.25.	2027.09.27.	2028.04.25.	2028.08.25.	2028.12.26.	
151	48	101동 4호 102동 4호	1층	2	1,435,485,000	958,650,000	95,865,000	2,490,000,000	124,5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871,500,000
			2-5층	8	1,466,039,500	979,055,000	97,905,500	2,543,000,000	127,150,000	254,300,000	254,300,000	254,300,000	254,300,000	254,300,000	254,300,000	890,050,000
			6-10층	10	1,496,594,000	999,460,000	99,946,000	2,596,000,000	129,800,000	259,600,000	259,600,000	259,600,000	259,600,000	259,600,000	259,600,000	908,600,000
			11-15층	10	1,527,148,500	1,019,865,000	101,986,500	2,649,000,000	132,450,000	264,900,000	264,900,000	264,900,000	264,900,000	264,900,000	264,900,000	927,150,000
			16-19층	8	1,603,246,500	1,070,685,000	107,068,500	2,781,000,000	139,050,000	278,100,000	278,100,000	278,100,000	278,100,000	278,100,000	278,100,000	973,350,000
			20층 이상	10	1,648,790,000	1,101,100,000	110,110,000	2,860,000,000	143,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1,001,000,000
	24	103동 1호	1층	1	1,394,553,500	931,315,000	93,131,500	2,419,000,000	120,950,000	241,900,000	241,900,000	241,900,000	241,900,000	241,900,000	241,900,000	846,650,000
			2-5층	4	1,424,531,500	951,335,000	95,133,500	2,471,000,000	123,550,000	247,100,000	247,100,000	247,100,000	247,100,000	247,100,000	247,100,000	864,850,000
			6-10층	5	1,453,933,000	970,970,000	97,097,000	2,522,000,000	126,100,000	252,200,000	252,200,000	252,200,000	252,200,000	252,200,000	252,200,000	882,700,000
			11-15층	5	1,483,911,000	990,990,000	99,099,000	2,574,000,000	128,7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900,900,000
			16-19층	4	1,558,279,500	1,040,655,000	104,065,500	2,703,000,000	135,150,000	270,300,000	270,300,000	270,300,000	270,300,000	270,300,000	270,300,000	946,050,000
			20층 이상	5	1,602,670,000	1,070,300,000	107,030,000	2,780,000,000	139,000,000	278,000,000	278,000,000	278,000,000	278,000,000	278,000,000	278,000,000	973,000,000
151P	2	101동 4호 102동 4호	25층	2	1,788,303,000	1,194,270,000	119,427,000	3,102,000,000	155,100,000	310,200,000	310,200,000	310,200,000	310,200,000	310,200,000	310,200,000	1,085,700,000
	1	103동 1호	25층	1	1,738,147,500	1,160,775,000	116,077,500	3,015,000,000	150,750,000	301,500,000	301,500,000	301,500,000	301,500,000	301,500,000	301,500,000	1,055,250,000
153	46	101동 1호 102동 1호	2-5층	8	1,441,826,500	962,885,000	96,288,500	2,501,000,000	125,050,000	250,100,000	250,100,000	250,100,000	250,100,000	250,100,000	250,100,000	875,350,000
			6-10층	10	1,471,804,500	982,905,000	98,290,500	2,553,000,000	127,650,000	255,300,000	255,300,000	255,300,000	255,300,000	255,300,000	255,300,000	893,550,000
			11-15층	10	1,501,782,500	1,002,925,000	100,292,500	2,605,000,000	130,250,000	260,500,000	260,500,000	260,500,000	260,500,000	260,500,000	260,500,000	911,750,000
			16-19층	8	1,576,727,500	1,052,975,000	105,297,500	2,735,000,000	136,750,000	273,500,000	273,500,000	273,500,000	273,500,000	273,500,000	273,500,000	957,250,000
			20층 이상	10	1,622,271,000	1,083,390,000	108,339,000	2,814,000,000	140,700,000	281,400,000	281,400,000	281,400,000	281,400,000	281,400,000	281,400,000	984,900,000
			2-5층	4	1,483,911,000	990,990,000	99,099,000	2,574,000,000	128,7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900,900,000
	20	103동 4호	6-10층	5	1,514,465,500	1,011,395,000	101,139,500	2,627,000,000	131,350,000	262,700,000	262,700,000	262,700,000	262,700,000	262,700,000	262,700,000	919,450,000
			11-15층	5	1,545,596,500	1,032,185,000	103,218,500	2,681,000,000	134,050,000	268,100,000	268,100,000	268,100,000	268,100,000	268,100,000	268,100,000	938,350,000
			16-19층	4	1,622,847,500	1,083,775,000	108,377,500	2,815,000,000	140,750,000	281,500,000	281,500,000	281,500,000	281,500,000	281,500,000	281,500,000	985,250,000
			20층 이상	2	1,668,967,500	1,114,575,000	111,457,500	2,895,000,000	144,750,000	289,500,000	289,500,000	289,500,000	289,500,000	289,500,000	289,500,000	1,013,250,000
153P	2	101동 1호 102동 1호	25층	2	1,760,054,500	1,175,405,000	117,540,500	3,053,000,000	152,650,000	305,300,000	305,300,000	305,300,000	305,300,000	305,300,000	305,300,000	1,068,550,000
	1	103동 4호	22층	1	1,811,363,000	1,209,670,000	120,967,000	3,142,000,000	157,100,000	314,200,000	314,200,000	314,200,000	314,200,000	314,200,000	314,200,000	1,099,700,000
154	48	101동 3호 102동 3호	1층	2	1,521,383,500	1,016,015,000	101,601,500	2,639,000,000	131,950,000	263,900,000	263,900,000	263,900,000	263,900,000	263,900,000	263,900,000	923,650,000
			2-5층	8	1,553,667,500	1,037,575,000	103,757,500	2,695,000,000	134,75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943,250,000
			6-10층	10	1,585,951,500	1,059,135,000	105,913,500	2,751,000,000	137,550,000	275,100,000	275,100,000	275,100,000	275,100,000	275,100,000	275,100,000	962,850,000
			11-15층	10	1,618,235,500	1,080,695,000	108,069,500	2,807,000,000	140,350,000	280,700,000	280,700,000	280,700,000	280,700,000	280,700,000	280,700,000	982,450,000
			16-19층	8	1,698,945,500	1,134,595,000	113,459,500	2,947,000,000	147,350,000	294,700,000	294,700,000	294,700,000	294,700,000	294,700,000	294,700,000	1,031,450,000
			20층 이상	10	1,747,371,500	1,166,935,000	116,693,500	3,031,000,000	151,550,000	303,100,000	303,100,000	303,100,000	303,100,000	303,100,000	303,100,000	1,060,850,000
	24	103동 2호	1층	1	1,581,916,000	1,056,440,000	105,644,000	2,744,000,000	137,200,000	274,400,000	274,400,000	274,400,000	274,400,000	274,400,000	274,400,000	960,400,000
			2-5층	4	1,615,353,000	1,078,770,000	107,877,000	2,802,000,000	140,100,000	280,200,000	280,200,000	280,200,000	280,200,000	280,200,000	280,200,000	980,700,000

			6-10층	5	1,648,790,000	1,101,100,000	110,110,000	2,860,000,000	143,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1,001,000,000
			11-15층	5	1,682,803,500	1,123,815,000	112,381,500	2,919,000,000	145,950,000	291,900,000	291,900,000	291,900,000	291,900,000	291,900,000	291,900,000	1,021,650,000
			16-19층	4	1,766,972,500	1,180,025,000	118,002,500	3,065,000,000	153,250,000	306,500,000	306,500,000	306,500,000	306,500,000	306,500,000	306,500,000	1,072,750,000
			20층 이상	5	1,817,128,000	1,213,520,000	121,352,000	3,152,000,000	157,600,000	315,200,000	315,200,000	315,200,000	315,200,000	315,200,000	315,200,000	1,103,200,000
	20	104동 2호	1층	1	1,547,902,500	1,033,725,000	103,372,500	2,685,000,000	134,250,000	268,500,000	268,500,000	268,500,000	268,500,000	268,500,000	268,500,000	939,750,000
			2-5층	4	1,581,916,000	1,056,440,000	105,644,000	2,744,000,000	137,200,000	274,400,000	274,400,000	274,400,000	274,400,000	274,400,000	274,400,000	960,400,000
			6-10층	5	1,615,353,000	1,078,770,000	107,877,000	2,802,000,000	140,100,000	280,200,000	280,200,000	280,200,000	280,200,000	280,200,000	280,200,000	980,700,000
			11-15층	5	1,648,790,000	1,101,100,000	110,110,000	2,860,000,000	143,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286,000,000	1,001,000,000
			16-19층	4	1,682,803,500	1,123,815,000	112,381,500	2,919,000,000	145,950,000	291,900,000	291,900,000	291,900,000	291,900,000	291,900,000	291,900,000	1,021,650,000
			20층 이상	1	1,732,959,000	1,157,310,000	115,731,000	3,006,000,000	150,300,000	300,600,000	300,600,000	300,600,000	300,600,000	300,600,000	300,600,000	1,052,100,000
154P	2	101동 3호 / 102동 3호	25층	2	1,886,308,000	1,259,720,000	125,972,000	3,272,000,000	163,600,000	327,200,000	327,200,000	327,200,000	327,200,000	327,200,000	327,200,000	1,145,200,000
	1	103동 2호	25층	1	1,961,253,000	1,309,770,000	130,977,000	3,402,000,000	170,100,000	340,200,000	340,200,000	340,200,000	340,200,000	340,200,000	340,200,000	1,190,700,000
	1	104동 2호	21층	1	1,870,166,000	1,248,940,000	124,894,000	3,244,000,000	162,200,000	324,400,000	324,400,000	324,400,000	324,400,000	324,400,000	324,400,000	1,135,400,000
160	45	101동 2호 102동 2호	1층	2	1,558,856,000	1,041,040,000	104,104,000	2,704,000,000	135,200,000	270,400,000	270,400,000	270,400,000	270,400,000	270,400,000	270,400,000	946,400,000
			2-5층	8	1,592,293,000	1,063,370,000	106,337,000	2,762,000,000	138,100,000	276,200,000	276,200,000	276,200,000	276,200,000	276,200,000	276,200,000	966,700,000
			6-10층	10	1,625,153,500	1,085,315,000	108,531,500	2,819,000,000	140,950,000	281,900,000	281,900,000	281,900,000	281,900,000	281,900,000	281,900,000	986,650,000
			11-15층	10	1,658,590,500	1,107,645,000	110,764,500	2,877,000,000	143,850,000	287,700,000	287,700,000	287,700,000	287,700,000	287,700,000	287,700,000	1,006,950,000
			16-19층	8	1,741,030,000	1,162,700,000	116,270,000	3,020,000,000	151,000,000	302,000,000	302,000,000	302,000,000	302,000,000	302,000,000	302,000,000	1,057,000,000
			20층 이상	7	1,791,185,500	1,196,195,000	119,619,500	3,107,000,000	155,350,000	310,700,000	310,700,000	310,700,000	310,700,000	310,700,000	310,700,000	1,087,450,000
	24	103동 3호	1층	1	1,603,823,000	1,071,070,000	107,107,000	2,782,000,000	139,100,000	278,200,000	278,200,000	278,200,000	278,200,000	278,200,000	278,200,000	973,700,000
			2-5층	4	1,638,413,000	1,094,170,000	109,417,000	2,842,000,000	142,100,000	284,200,000	284,200,000	284,200,000	284,200,000	284,200,000	284,200,000	994,700,000
			6-10층	5	1,672,426,500	1,116,885,000	111,688,500	2,901,000,000	145,050,000	290,100,000	290,100,000	290,100,000	290,100,000	290,100,000	290,100,000	1,015,350,000
			11-15층	5	1,706,440,000	1,139,600,000	113,960,000	2,960,000,000	148,000,000	296,000,000	296,000,000	296,000,000	296,000,000	296,000,000	296,000,000	1,036,000,000
			16-19층	4	1,791,762,000	1,196,580,000	119,658,000	3,108,000,000	155,400,000	310,800,000	310,800,000	310,800,000	310,800,000	310,800,000	310,800,000	1,087,800,000
			20층 이상	5	1,843,070,500	1,230,845,000	123,084,500	3,197,000,000	159,850,000	319,700,000	319,700,000	319,700,000	319,700,000	319,700,000	319,700,000	1,118,950,000
	26	104동 3호	1층	1	1,569,809,500	1,048,355,000	104,835,500	2,723,000,000	136,150,000	272,300,000	272,300,000	272,300,000	272,300,000	272,300,000	272,300,000	953,050,000
			2-5층	4	1,603,823,000	1,071,070,000	107,107,000	2,782,000,000	139,100,000	278,200,000	278,200,000	278,200,000	278,200,000	278,200,000	278,200,000	973,700,000
			6-10층	5	1,638,413,000	1,094,170,000	109,417,000	2,842,000,000	142,100,000	284,200,000	284,200,000	284,200,000	284,200,000	284,200,000	284,200,000	994,700,000
			11-15층	5	1,672,426,500	1,116,885,000	111,688,500	2,901,000,000	145,050,000	290,100,000	290,100,000	290,100,000	290,100,000	290,100,000	290,100,000	1,015,350,000
			16-19층	4	1,706,440,000	1,139,600,000	113,960,000	2,960,000,000	148,000,000	296,000,000	296,000,000	296,000,000	296,000,000	296,000,000	296,000,000	1,036,000,000
			20층 이상	7	1,757,748,500	1,173,865,000	117,386,500	3,049,000,000	152,450,000	304,900,000	304,900,000	304,900,000	304,900,000	304,900,000	304,900,000	1,067,150,000
160P	2	101동 2호 / 102동 2호	22, 25층	2	1,944,534,500	1,298,605,000	129,860,500	3,373,000,000	168,650,000	337,300,000	337,300,000	337,300,000	337,300,000	337,300,000	337,300,000	1,180,550,000
	1	103동 3호	25층	1	2,001,031,500	1,336,335,000	133,633,500	3,471,000,000	173,550,000	347,100,000	347,100,000	347,100,000	347,100,000	347,100,000	347,100,000	1,214,850,000
	1	104동 3호	27층	1	1,908,215,000	1,274,350,000	127,435,000	3,310,000,000	165,500,000	331,000,000	331,000,000	331,000,000	331,000,000	331,000,000	331,000,000	1,158,500,000
191	26	104동 1호	1층	1	1,884,002,000	1,258,180,000	125,818,000	3,268,000,000	163,400,000	326,800,000	326,800,000	326,800,000	326,800,000	326,800,000	326,800,000	1,143,800,000
			2-5층	4	1,924,933,500	1,285,515,000	128,551,500	3,339,000,000	166,950,000	333,900,000	333,900,000	333,900,000	333,900,000	333,900,000	333,900,000	1,168,650,000
			6-10층	5	1,965,865,000	1,312,850,000	131,285,000	3,410,000,000	170,500,000	341,000,000	341,000,000	341,000,000	341,000,000	341,000,000	341,000,000	1,193,500,000
			11-15층	5	2,006,796,500	1,340,185,000	134,018,500	3,481,000,000	174,050,000	348,100,000	348,100,000	348,100,000	348,100,000	348,100,000	348,100,000	1,218,350,000
			16-19층	4	2,047,728,000	1,367,520,000	136,752,000	3,552,000,000	177,600,000	355,200,000	355,200,000	355,200,000	355,200,000	355,200,000	355,200,000	1,243,200,000
			20층 이상	7	2,109,413,500	1,408,715,000	140,871,500	3,659,000,000	182,950,000	365,900,000	365,900,000	365,900,000	365,900,000	365,900,000	365,900,000	1,280,650,000
191P	1	104동 1호	27층	1	2,267,951,000	1,514,590,000	151,459,000	3,934,000,000	196,700,000	393,400,000	393,400,000	393,400,000	393,400,000	393,400,000	393,400,000	1,376,9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청약 유의 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자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청약신청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급 금액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중도금 및 잔금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기관, 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춰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하여야 하며, 대출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 불가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 완납 시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가나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추가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선납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납부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적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 사항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사업시행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당첨자 선정 및 계약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총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단지모형, 견본주택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조경시설물,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 1/2씩 부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공급기준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tr> <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준</th><th>점수</th></tr> <tr> <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3명</td><td>35</td></tr> <tr> <td>2명</td><td>25</td></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2명</td><td>10</td></tr> <tr> <td>1명</td><td>5</td></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 <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d rowspan="2">-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abl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4-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 <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 <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 <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 <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 <td>3명</td><td>20</td><td></td><td></td></tr> <tr> <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able>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table>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	100%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	100%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23.(화) ~ 2026.07.02.(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6.23.(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특별 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6.06.23.(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6.06.27.(토) ~ 07.04.(토) (10:00~16:00) ■ 장소 : 건본주택(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50-2번지) ※ 자격확인 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별도 통보예정.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서류 제출 일정 및 운영시간,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기한 내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건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s://알티에로광안.com>)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천참여 및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0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건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한 경우 생략 ▪ 당사 건본주택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전세사기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건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한 경우 생략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 산정 시)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자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정산정기준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임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임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임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임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임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해당 주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명실을 확인하는 공문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관련 확인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05.)까지로 설정
부적격 통보 받은자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대리인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단신부임)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임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 2026.07.06.(월) ~ 2026.07.08.(수) (3일간) /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50-2 ※ 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통보예정이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287-910060-072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0101호 경우, 입금자명 '1010101홍길동' 기재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격검증 서류와 함께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구매금액 175,000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 수입인지 구매금액 : 10억원 초과 35만원 중 분양계약자 부담금 175,000원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입력(인지세납부/부동산 등 소유권이전/175,000원/1건 > 테스트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오프라인 구매 시 : 은행 및 우체국 가능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발급분)
	○		▪ 위임장(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서명)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이며,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용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개시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계

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함.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는 계약자의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또는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라 납입 확인 불가할 경우 미납으로 간주되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모든 분양수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납은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자(매도인)는 본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함.

11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원/VAT 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1차(10%)	중도금 2차(10%)	잔금(70%)	비고
		계약시	2027.05.25.	2028.04.25.	입주지정일	
151	35,0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24,500,000	
151P	35,0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24,500,000	
153	35,0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24,500,000	
153P	35,0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24,500,000	
154	35,600,000	3,560,000	3,560,000	3,560,000	24,920,000	
154P	35,600,000	3,560,000	3,560,000	3,560,000	24,920,000	
160	37,200,000	3,720,000	3,720,000	3,720,000	26,040,000	
160P	37,200,000	3,720,000	3,720,000	3,720,000	26,040,000	
191	43,700,000	4,370,000	4,370,000	4,370,000	30,590,000	
191P	43,700,000	4,370,000	4,370,000	4,370,000	30,59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번호	예금주명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287-910060-043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 품목 안내

※ 발코니 미확장 시 프리미엄 시스템 에어컨(무상) 및 추가 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합니다.

(1) 조명 스타일업

(단위: 원/VAT 포함)						
구분	옵션명	주택형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구성 내용	공급금액	비고
조명 스타일업	조명밀도 업그레이드	전 타입	일반 노출등 적용 (거실, 안방, 침실, 발코니, 실외기실) 일반 매입등 적용 (복도, 주방, 욕실)	특화 등기구 적용 (견본주택 적용 제품 참고)	10,000	

- 특화 조명의 위치·수량 및 디자인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및 자재 수급 여건에 따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드레스룸 스타일업

(단위: 원/VAT 포함)						
구분	옵션명	주택형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구성 내용	공급금액	비고
드레스룸 스타일업	시스템가구	15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프리미엄 시스템가구 (클란트)	21,000,000	
		153			25,000,000	
		154			26,000,000	
		160, 191			30,000,000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시스템가구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주방 스타일업

(단위: 원/VAT 포함)

품목	품목	주택형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구성 내용	공급금액	비고
주방 스타일업	주방가구	151	수입 주방가구 (폐발까사)	수입 주방가구 (유로모빌)	66,000,000	
		153,154			67,000,000	
		160			87,000,000	
		191			86,000,000	
	빌트인 냉장고 (유로모빌)	151/153/154/160/191	냉장고장 (키큰장, 빌트인가전장포함)	냉장, 냉동(밀레) + 김치냉장고(LG) + 냉장고장(빌트인가전장, 키큰장포함_160,191은 키큰장이 FULL-OUT장식장으로 변경)	31,000,000	
	빌트인 냉장고 (폐발까사)	151/153/154/160/191	냉장고장 (키큰장, 빌트인가전장포함)	냉장, 냉동(밀레) + 김치냉장고(LG) + 냉장고장(빌트인가전장, 키큰장포함)		
	빌트인 인덕션	151/153/154/160/191	3구 인덕션(LG)	4구 인덕션(밀레)	3,100,000	
	빌트인 전기오븐	151/153/154/160/191	전기오븐(LG)	전기오븐(밀레)	4,700,000	
	렌지후드	151/153/154/160/191	독립형 렌지후드 (엘리카)	독립형 와이드형 렌지후드 (엘리카)	1,7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151/153/154/160/191	식기세척기 (LG)	식기세척기 (밀레)	3,200,000	
	빌트인 와인냉장고	151/153/154/160/191	미설치	와인냉장고(밀레)	5,400,000	

※ 유의사항

-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및 변경할 수 없음.
- 주택형별에 따라 설치되는 가전기기(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쿡탑, 식기세척기 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기기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가전제품 품목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가전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냉장고장은 타입별로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하며, 냉장고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형태, 구성 및 세부규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 패키지 유상옵션 선택시, 김치냉장고 상부장 도어가 별도로 시공됩니다
- 평면 구성 및 가전(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선택에 따라 도어 문열림 방향은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면 마감재는 가구패널로 마감되며, 주방가구 옵션(유로모빌, 폐발까사) 선택에 따라 마감재가 변경됩니다
- 와인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상기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전기콘센트가 별도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의 아일랜드 상판(유상옵션형 : 천연석 / 기본형 : 세라믹)은 나누어 시공되며, 무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자재간 이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싱크상부장 내부에 SMPS함이 설치됩니다 (본공사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상판, 벽판	• 본공사 시 타일 및 마감자재의 특성에 따라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뭇부위가 추가·변경될 수 있고, 자재 간 이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의 설치위치 및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키큰장은 가구 길이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냉장고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냉장고 패키지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가구패널로 마감되며, 주방가구 옵션(유로모빌, 폐발까사) 선택에 따라 마감재가 변경됩니다

	-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주방 냉장고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 패키지 유상옵션 선택시, 160, 191타입은 큰장이 FULL-OUT장식장으로 변경됩니다. - 도어는 가구패널부착형으로 시공됩니다.
인덕션	• 인덕션 선택 시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음(전기차단기 설치됨, 보조주방의 가스쿡탑에는 가스배관 및 차단기 설치 됨)
빌트인 전기오븐	• 전기오븐은 전자레인지와 오븐 겸용으로 사용 가능함.
독립형 렌지후드	- 본공사 시 법률에 따른 자동식소화기 전기차단기 및 조작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커버에 자동식소화기의 전기차단기 점검 목적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 식기세척기 도어는 가구패널부착형으로 시공됨.
와인냉장고	• 본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4) 욕실 스타일업

(단위: 원/VAT 포함)

구분	옵션명	주택형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구성 내용	공급금액	비고
욕실 스타일업	다기능 멀티팬	151/153/154/160/191 (욕실 2)	기본형 환풍기	다기능 멀티팬(힘펠) - 1개소	550,000	
		151/153/154/160/191 (욕실 3)				
		151/153/154/160/191 (욕실 2,3)		다기능 멀티팬(힘펠) - 2개소	1,100,000	
	스타일러	151/153/154/160/191	불박이장	스타일러(LG)	1,200,000	

※ 유의사항

다기능 멀티팬	- 다기능멀티팬 선택 시 세대 내 욕실에 제품이 설치되며, 기본형 환풍기 설치 위치와 상이함. - 다기능멀티팬은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다기능멀티팬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

(5)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번호	예금주명
추가 선택 품목 납부계좌	하나은행	287-910060-050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6)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성능개선,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일정은 추후 통보)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확장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선택품목 설치 위치의 단위세대 마감재의 변경 및 미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시공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 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제3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추가선택품목의 공급)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및 불박이 가전제품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아파트는 단일제품을 제공하여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액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장에는 바닥재 및 벽지, 천장마감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형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12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등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예정일 : 2029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입주지정기간을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지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잔금완납·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북라운지, 키즈스테이션, 다이닝라운지, 핏케어 라운지, 코인세탁실, 공동육아시설, 세대창고, 자전거보관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

라운지, GX, 필라테스, 스쿼시),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내진 성능 및 능력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1등급	VII-0.243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구분	주차장 차로의 폭	지하 주차장 차로의 유효높이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
지하1층	6.0m ~ 7.0m	2.3m	
지하2층	6.0m ~ 7.0m	2.3m	
지하3층	6.0m ~ 7.4m	2.3m	
지하4층	6.0m ~ 7.4m	2.7m	2.7m
지하5층	6.0m ~ 7.4m	2.7m	
지하6층	6.0m ~ 7.4m	2.7m	2.7m

-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하므로 견본주택에서 설계도, 모형도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명칭	• 공동주택의 명칭(알티에로광안) 및 분양 시 입주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부산 알티에로광안 공동주택용지 (민락동 316-2번지 일원)의 행정구역 (법정동)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면적 관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분양계약 이후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간에 전용면적 변경 시에도

	상호간의 대지지분 증감은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시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등·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함.
계약 공통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 부대시설은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 업무를 위한 A/S센터로 운영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자는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시 변경하고 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학교관련 유의사항	<초등학교> • 본 단지 입주예정자 중 초등학생은 민락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임. <중·고등학교> • 본 단지 입주예정자 중 중학생은 한바다중학교 및 동아중학교에 배정 예정이며, 고등학생은 교육감 배정 평준화적용 일반고의 경우 해운대 학군에 해당됨. 지방에 따른 선지원 후 추첨 방식에 따라 부산시 전체 평준화 적용 일반고로 배정될 수 있으며, 추첨되지 않을 경우 통합학군(남구·동래·해운대)으로 배정됨. 다만, 학교장 전형고는 학교별 모집요강에 따름. • 향후 학생 수 변화 추이와 본 지역의 주택개발과 인근 지역 개발경과 등의 배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치사항이 변동될 수 있음. <공통사항> • 학생 배정계획의 확정에는 본 단지 인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초·중학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조례에 따라 공동육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홍보물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됨. - 건본주택(홈페이지), 광고 홍보인쇄물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VR, CG 및 모형,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이에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부색채 및 마감재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및 사업주체 디자인 매뉴얼 변경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달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ALTIERO SMART PLATFORM	- 해당단지의 ALTIERO SMART PLATFORM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단지(입주민)에 한하여 세대별 월과금이 발생할 수 있음. - ALTIERO SMART PLATFORM 서비스에서 상태조화, 무인택배조화 및 세대내 거실조명, 난방, 가스차단제어 등이 가능하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등)와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 앱으로 연동하여야 함. - ALTIERO SMART PLATFOR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ALTIERO SMART PLATFORM 서비스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ALTIERO SMART PLATFORM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각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와 영상의 ALTIERO SMART PLATFORM 서비스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단지 ALTIERO SMART PLATFORM 서비스와 호환이 되지 않음.
■ 설계관련	
사업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공동주택 입주 후 진동 및 분진 등의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부산 알티어로광안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재해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산시의 공용버스노선 및 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업지 주변 공용버스 운행이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땀샘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 청약·계약 전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펜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소음방지대책으로 본 대지 및 주변 대지에 저소음 포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차량출입구 및 대지경계선 내의 보도는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교통시설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은 입주민의 부담이니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기간은 착공신고서 기준이며, 사업계획승인서에 고시된 사업기간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대지 외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업지 지반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외부공간 계획변경은 당사업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알티에로광안 주택건설사업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출입구 차선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경찰서 협의에 따른 주출입구 신호운영 교차로, 가·감속차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음.
- 사업지 주변 도로에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라 보행자 안전펜스가 설치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안전펜스, 신호등,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단지 주변의 교통시설물은 관계기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될 경우 입주예정시기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 사업자의 설치계획 및 기타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본 단지 대지의 남측(좌측, 중앙, 우측 총 3개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가 구성되어 있음. 공개공지는 외부 일반인의 출입 및 이용이 상시 가능하므로 인접한 세대 및 단지 내에 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북측 원형존치(녹지)용지 및 녹지 내 기존 측구와 산마루 측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로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개시 후 이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관리인의 단지내 출입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측 원형존치(녹지)용지 및 녹지 내 기존 측구와 산마루 측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로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개시 후 이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관리인의 단지내 출입 등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 및 제정신고 예정이며, 입주예정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단지 동측 옥련선원 진입도로 및 주변 교통체계(횡단보도, 교차로 운영방식, 신호체계 등)는 관계기관 협의, 교통영향평가, 향후 지역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변시설관련	• 본 단지 동측으로 9m도로, 서측으로 10m도로, 남측으로 10m 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과 서측에는 공개공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경사로, 조경석 및 계단 등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으로 기존 주거지,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생활소음. 차량통행 및 보행자 이동 등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동측 및 북측으로 녹지지역 및 유적지(옥련선원, 백산일원)이 인접하여 자연환경이 형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벌레 유입, 야생동물 출현, 낙엽, 습기 및 자연환경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남측으로 기존 주거밀집지역 및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상업활동 및 생활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야간조명, 차량 통행 증가 및 주차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동측으로 학교시설(민락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등. 하교 시간대 및 행사 시 보행증가, 차량정체, 소음 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의 출발 및 정차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차후 이동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한국전력공사, KT 등의 통신사업자 계획에 따라 전주, 통신주 등의 각종 지상시설물 및 지중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경계부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조경구조물 및 수경시설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및 주변 산과의 레벨차로 형성되는 옹벽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이 등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스펙 구현 등으로 인해 모형 등의 홍보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생울타리 및 헨스 설치 구간은 주변현황 및 공사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정 적용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자연녹지지역과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부디자인 및 디자인특화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의 색채, 마감재 및 경관조명 계획은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심의 등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도시의 트렌드 변화, 색채의 유형변화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나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단지명 사인물 등은 향후 상위 법령등 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시설의 외부 입면 및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옥탑장식물은 구조설계적용에 의하여 기둥, 보, 벽체가 신설/삭제되거나 부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화설계적용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특화 디자인, 동출입구 형태,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에 설치되는 D/A, 계단, 커뮤니티 천창 등의 시설물은 조경계획 특화 등에 따라 설치 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에 설치되는 D/A, 계단, 커뮤니티 천창 등의 시설물과 접한 세대는 조망,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로 및 1층 아파트 현관은 주변 대지 여건 및 디자인 특화에 따라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출입구 특화 디자인은 각 동의 저층부 출입구에 적용하며, 출입구 형태에 따라 혹은 디자인에 맞는 마감재 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 부담임. • 주동 옥상/옥탑 조형물 및 경관조명, 축벽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남측의 수경공간 시설물의 조명 계획으로 인해 해당 수경공간이 보이는 저층 세대 및 인근 세대는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 등을 통해 위치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야간 경관조명에 의해 고층세대는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 등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아파트 상부에는 피뢰침, 안테나, 옥탑조명(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의 코어벽면, 주동 벽면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작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등이 결정되며, 미술작품은 관련 법령과 심의절차를 거쳐 제작 및 설치 하고,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104동의 경우 101~103동 주출입구와 형태가 다름에 따라 출입구 디자인이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101동 및 102동 사이 부대시설의 천장 계획으로 인해, 해당 인근 세대는 눈부심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 등을 통해 위치 확인후 진행하여야 함. • 104동 인근 상가상부 및 램프차로 벽면의 특화 디자인은 마감재, 규격, 형태 등이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입면의 경관 조명 계획으로 인해 인근 세대 눈부심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주출입구 관련	• 단지 주출입구는 남측에 1개소와 남측의 부출입구 1개소, 서측에 부출입구 1개소가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인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102동은 주출입구와 거리가 멀 수 있으며,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음. • 대지 남측(주출입구), 남측 및 서측(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설치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가 인접하여 이용객 및 차량의 출입에 따른 통행 증가, 소음 및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는 공동주택 입주인, 방문자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이용자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입주인 임의로 통제 및 점유, 소유권 주장 등을 할 수 없음. • 주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구역이 있어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이 주기적으로 정차를 할 수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경사지형을 활용한 데크형 아파트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는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단지 내 레벨차 및 지형 여건에 따라 일부구간은 이동동선이 제한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차량진출입 차단기는 차량 동선 및 교통 상황에 따라 현 계획되어 있는 위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는 비상차량 및 쓰레기 운반차량, 입주인을 위한 출입구로 계획되었음. • 104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키즈스테이션(어린이 등하원 대기장소)이 형성되어 있으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를 통하여 단지내 진입하는 통학차량의 경우 진입 후 회전교차로에 정차할수 있음. (단, 단지내 차단기 등에 대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에 통학차량 정차예정공간 근처에 키즈스테이션이 설치 예정으로 추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용객이나 차량에 의한 소음 및 교통정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남측 부출입구의 경우, 주출입구(남측)의 우측 경사로를 통해 지하 4층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차량의 출입에 따른 통행 증가, 소음 및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부출입구의 경우, 외부에서 지하 4층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차량의 출입에 따른 통행 증가, 소음 및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
문주/ 경비실	• 104동은 주출입구와 인접해 있으며, 문주에 의한 시야간섭, 입,출차에 의한 경광등에 의해 소음,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문주, 차량 진출입동선 및 회전교차로는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식재, 포장,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수 있음. •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문주는 구조 여건에 따라 설치 규모 및 기동 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의 경우 차량 및 보행 동선계획에 의하여 위치 및 설치규모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는 남측에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 부출입구에는 경비실이 조성되지 않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설물	• 전동 저층 세대는 제연휀룸, 휀룸 등 D/A 설치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방법상 취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D/A는 실시공시 높이 및 형태, 위치 등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주동 필로티 및 주동 인근에 설치되며, 형태, 크기, 높이, 위치, 조경계획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전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 가동 시 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상부 및 측면으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하부 출입구 내부 및 주동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장 아파트 4개소가 설치될 예정임.(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전 동 인근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세대간섭, 악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각 주동 인근(지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당사 디자인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에 대해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 4층, 총 4개소가 설치(코어당 1개소)되며, 추후 시공과정에서 형태,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물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놀이터)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함.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지하2층 103동 하부에 위치하고, 자전거 보관소(34개), 자전거보관함(76개) 총 110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통한 자전거보관소 및 보관함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 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또는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는 부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정압기의 위치가 추후 계획변경을 통해 이동 및 디자인, 재질, 구조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태양광 집광판은 옥상에 분산 설치될 예정임. (태양광 집광판 설치시 동배치, 방위각,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효율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는 변경 혹은 증가될 수 있음)
이동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 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 장비는 본 공사 시 동호수 변경에 따른 변경과 수량, 위치,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는 귀책 사유가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옥탑에 (104동 1개소) TV공청 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지상층에 설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 안테나/중계설비 (101동 103동 지하3층 EPS/TPS 내 2개소)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경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 정차위치에 조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예정 위치에 조경이 간소화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해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 및 주차출입구,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어린이 놀이터, 주동하부 출입구,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생활폐기물 보관소, 외부 계단,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 조경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도로, 통행	• 해당 사업대지 내 보행/차량 동선계획, 수직동선계획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 계단, 외부 램프 등), 단차(레벨) 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내 비상차로등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외부 도로는 상급기관 인허가 진행에 따라 제반시설(무단횡단 방지 횡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 진출입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보행자 진입로 및 통행로가 설치되는 인근 주동세대는 소음, 진동, 시야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보행자 출입구의 형태 및 구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색상 및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됨.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는 각 동 쓰레기 처리장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차량 이동로로 이용되며 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대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은 불가함.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동별계획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 동(101동~104동) 1층 세대근처에 D/A 등 돌출된 시설로 시야간섭, 생활소음, 진동, 먼지,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후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4동 하부 지하6층, 지하5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저층부 세대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할 점포 종류에 따라 소음 및 먼지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있음. • 104동은 주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인접해있어 차량 통행에 따라 불빛이 세대 간섭될 수 있으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과 104동 사이, 101동 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세대간섭,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과 104동 사이 지상1층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 이용에 따라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각 동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102동 지하1층~지하2층에 부대복리시설(복라운지, 골프프렉티스 존, 피트니스 존, 공동육아시설, 다이닝라운지, 펫케어라운지)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 이용에 따라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과 남측에 공개공지를 접하고 있음. • 각동 지하층에 아래와 같은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저층부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 피트니스 존, 필라테스, GX, 탈의실/샤워실, 로비, 다이닝라운지, 펫케어라운지, 관리사무소, 스쿼시 존 - 102동 : 골프프렉티스 존, 복라운지, 실외기실, 공동육아시설, 경로당 - 103동 : 자전거 보관소 및 보관함 - 104동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분리수거장(근생용), 키즈스테이션, 우수조, 소화저수조, 발전기실, 전기실 • 101동 지하1층에 피트니스, 필라테스, GX 등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인근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다른 동 대비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필히 위치를 확인후 진행하여야 함. • 104동 인근(서측, 남측)으로 수공간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하여 주변 세대는 사용자들에 의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2동 사이에 육생비오름이 형성될 수 있으며, 악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에 주민운동시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 101~102동, 104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및 인피니티풀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라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에 인접한 동은 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설치로 인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돌출되는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으로 각 동의 저층부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위치 및 형태, 높이, 크기, 조경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103동과 104동 사이, 101동과 102동 사이, 101동 남측에 외부계단 및 승강기가 계획되어 있어, 이용자에 의한 소음이나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

	을 수 있음. • 비상차량동선 인근에 방호옹벽 및 안전난간이 계획되어 있음. • 104동과 102동 사이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1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시야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과 102동 하부 지하 2층에 경로당 및 공동육아시설, 다이닝라운지,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 이용에 따라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지하6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 이용에 따라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시야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3동 151타입, 153타입 저층세대는 백산 옹벽에 의해 시야, 조망 등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103동 옥상에 구조인명공간이 설치되며, 104동 옥상엔 설치되지 않음. • 각 동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 설비 시설 등이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부여건	• 당첨자는 계약 전 자객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커뮤니티 상부에 천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실외기 공간(차폐)은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 설치에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임. • 단지 배치구조 및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지하3층~지하1층 내 계획 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한 인접한 저층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거동 1층이 필로티 구성된 동은 입구 상부에 보행자 안전시설인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층 세대는 빗물에 의한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측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됨. • 단지 내부에 일부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 (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단지외 대지의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문주 우측 외부 경사로 벽면에 지하주차장 환기 그릴이 설치되며, 보행자 통행 시 소음, 바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의 주출입구 및 서측 조경 수경공간의 규모, 형태, 디자인 및 마감 등은 시공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엘리베이터	• 각 동(101~4동) 21인승이며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및 주인공동시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전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비공간 확보 등 현장여건에 따라 진출입레벨,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형태, 창호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특화설계적용 및 실외기실 설치에 의하여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수량,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 및 진동, 수증기,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이용 및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물(실외기, 환기/냉난방 설비, 배기팬,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인접한 세대(특히 저층)는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열기/기류, 우수(빗물) 소음, 미관 저해 등의 생활 환경적 영향 및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물의 설치 위치, 개소,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본 공사시 변동 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시설 실외기 설치위치는 조정 및 차폐시설,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설치되는 인근 주동세대는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인접한 세대는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지하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기 및 채광에 불리할 수 있고,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101~103동 1층 세대 기준으로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위치는 지하 층수이나, 지하1~2층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6~5층 근린생활시설은 일부 외기에 면해있음.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은 별동으로 지상층과 같이 활용가능함. 경로당 및 펫케어룸은 기타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조닝에 계획되어있으나,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경로당,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하층, 어린이집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일부 시설은 환기 및 채광창에 면해 있으나 일조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고, 또한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 존, 골프프랙티스 존, 샤워실 등)은 101동, 102동 하부 지하층에 위치해있으며, 101동, 102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진입은 각 동 코어에서는 할 수 없으며, 지하층 및 지상 1층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3동, 104동은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해 있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상부에 천창이 설치되며, 101동, 102동 세대는 이로 인해 빛 반사, 시야 등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의 경우, 시공 시 사인물 계획 등 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table><tr><th>부대복리시설</th></tr><tr><td>지하1층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존, GX, 필라테스, 탈의실/샤워실(남,여), 골프프랙티스 존, 공용화장실(남,여), 복라운지)</td></tr><tr><td>지하2층 : 관리사무소, 로비, 다이닝라운지, 주방, 펍케어라운지, 공동육아시설, 코인세탁실, 경로당</td></tr><tr><td>지하2층 (지상 외부 별동) : 어린이집</td></tr><tr><td>지하3층 : 스쿼시 존, 공용화장실(남,여)</td></tr><tr><td>지하4층 : 세대창고(101동-96개, 102동-99개, 103동-96개, 104동 75개) 각 동별 무인택배함</td></tr><tr><td>지하6층 (지상 외부 별동) : 키즈스테이션 1개소, 경비실 1개소</td></tr></table>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존, GX, 필라테스, 탈의실/샤워실(남,여), 골프프랙티스 존, 공용화장실(남,여), 복라운지)	지하2층 : 관리사무소, 로비, 다이닝라운지, 주방, 펍케어라운지, 공동육아시설, 코인세탁실, 경로당	지하2층 (지상 외부 별동) : 어린이집	지하3층 : 스쿼시 존, 공용화장실(남,여)	지하4층 : 세대창고(101동-96개, 102동-99개, 103동-96개, 104동 75개) 각 동별 무인택배함	지하6층 (지상 외부 별동) : 키즈스테이션 1개소, 경비실 1개소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존, GX, 필라테스, 탈의실/샤워실(남,여), 골프프랙티스 존, 공용화장실(남,여), 복라운지)								
지하2층 : 관리사무소, 로비, 다이닝라운지, 주방, 펍케어라운지, 공동육아시설, 코인세탁실, 경로당								
지하2층 (지상 외부 별동) : 어린이집								
지하3층 : 스쿼시 존, 공용화장실(남,여)								
지하4층 : 세대창고(101동-96개, 102동-99개, 103동-96개, 104동 75개) 각 동별 무인택배함								
지하6층 (지상 외부 별동) : 키즈스테이션 1개소, 경비실 1개소								
지하 주차장	• 단지의 주차대수는 총 948대로, 아파트 932대와 근린생활시설 16대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는 총 3개소로, 주출입구 1개소와 부출입구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출입구 인근세대의 경우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6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지하2층은 101동~103동, 지하2층~지하5층은 전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 6층은 101동, 102동, 104동과 연결되어 있음. • 103동은 지하 6층에서 보행자 진입이 불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램프 출입부분 및 주차통로 유효높이는 지하1층 2.3m ,지하2층 2.3m, 지하3층 2.3m, 지하4층 2.7m, 지하5층 2.7m, 지하6층은 2.7m이고,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임. (다만,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제연헬륨 등이 노출될 수 있어 출입구의 유효높이와 통로의 유효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 입주전 및 현장방문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지하4층 층고는 조정이 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차램프 길이 증가 및 구배 변경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지하6층, 지하4층 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 높이는 2.7m로, 지하4층에서 택배차 진입 및 각 동별 출입이 가능하나 일부 구간에서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이유로 지하4층을 제외한 층은 통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주출입구 진입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됨.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은 인허가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헬륨(제연헬륨)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음. • 지하저수조 및 기계실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주차대수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획(급속, 완속, 콘센트)이 포함되어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 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3층~지하6층 104동 인근 전기충전구역(급속7대, 완속29대), 지하1층~지하2층 102동 인근 전기충전구역(급속 4대, 완속 8대)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전기차충전							

	구역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의 경우 구조설계적용에 의하여 기둥 혹은 구조부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특화설계적용으로 자재 및 설치규모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지열기계실/우수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냄새, 매연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4동 하부 지하에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이)가 이격하여 계획되어 있으나, 설비시설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 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음.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진출입시 기둥 등으로 인해 시야확보 및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동출입구 디자인은 각 동별 출입구 형태에 따라 디자인, 마감재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디자인에 따라 캐노피 등이 입구에 설치될 수 있음. - 부출입구(지하 4층) 인근에 재활용 보관창고가 위치해있으며, 쓰레기 수거 시 외부에서 작업해야하며, 이로 인해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104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지하 5~6층)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입점할 점포 종류에 따라 소음, 먼지,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은 104동 하부에 위치(지하 4층)하고 있으며, 104동 세대에 소음, 진동, 바람 등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 구획은 불가함.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별도 통행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주출입구 인근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함에 업주나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근린생활시설의 위치 및 크기 형태 호실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여건에 따라 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의하여 단지 내부 및 주변에 교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쓰레기 보관소가 별도로 계획(주출입구 경비실 인근)되어 있으며, 보행자 통행 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용공간 내부로 급수, 오배수, 가스, 소화배관이 시공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는 간판 설치 시 관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해당시청 관계부서의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및 전시품목 주요사항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천장고는 1층을 기준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확장형 세대로 시공됨.(각 실별 천장고는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160, 191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되지 않은 타입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확장기본형(160타입), 확장옵션형(191타입)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천장 환기구,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은 실시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용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제공 / 전시품목	•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세탁기, 건조기, TV, 밥솥 등), 침장 및 커튼류, 침실 벽체 아트판,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스포트라이트, 팬던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소품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실 천정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을 위한 설비로서 실 제공품목이 아님.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자,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확장기본형(160), 확장옵션형(191)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유상옵션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계약자는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등은 소방법에 따른 견본주택 설치 기준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수량은 변경되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벽지 및 시트(창호,걸레받이,목창호)는 가설건축물(견본주택)관련 방염처리되어 시공되었으나, 본 시공은 방염처리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시공됨. • 견본주택 세대 창호 외부에 설치된 뷰 이미지는, 160타입 25층, 191타입 27층에서 촬영된 사진이지만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위치 및 층에서 보이는 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요사항

※ 다음의 단위세대 설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주방벽마감, 가구, 가전, 창호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물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주방쪽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주방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 두께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시 인테리어, 가구, 설비, 전기, 조명, 천정 형태 등의 계획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벽체 두께에 따라 내부 유효면적이 감소할 수 있음. • 세탁기설치 구간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음. •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을 적치하면 안되며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현관장 내부 세대통합 분전함 설치 공간은 점검을 위해, 물건을 적치하면 안되며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높은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

	• 세라믹 타일, 주방 상판 추가 및 줄눈및 나누기 위치는 변경될수 있으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석재, 세라믹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입주자가 사용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시행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 불가할 수 있음.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장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두께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점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 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바람.
전기/설비	• 현관장에 세대통합 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 예정이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가 실외기실 내부에 설치되어 돌출되어 보일 수 있고 창호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 가스계량기 및 세대 가스배관은 실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원격검침 설치 시, 검침 데이터는 도시가스사에 제공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전열교환기 급배기구는 설비 및 전열교환기 장비 간섭으로 입면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실시공시 크기 및 위치 등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 바닥(천장)에 설치되는 급수, 급탕 분배기는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주방 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실외기실 천장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내 전기분전반은 관련 기준에 따라 세대 현관(전용 공간)에 통합세대분전반으로 설치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 방범용 동체 감지기는 거실측에 설치되며, 1층, 2층, 최상층세대는 외부 침입 방지용으로 침실(일부 발코니설치),거실, 알파룸 등에 설치되고,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건본주택의 건립세대와 높은 천장, 가구, 마감형태,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높은 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높은 천장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하며 상세한 사항은 추후 상품구성안을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 위치가 상이함. -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유상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천장몰딩, 높은천정, 등박스 및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 천장고 기준은 층별 상이하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각 동 2층~최상층 (높은천장기준): 2,400mm~2,500mm) - 타입별로 별도 언급하지 않은 내부공간 간 구획벽은 화장실과 면한 부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식벽체임. - 본 아파트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와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최하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 부대시설 상부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바람. -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를 반드시 개방하여야 함.(미개방시 화재사고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목문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댄퍼가 설치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의 상·하부와 후면 및 측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적용되지 않거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 및 바닥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주방,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등)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다용도실, 피난실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하부장 색상은 본 공사 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내부 포인트 타일 요청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 및 폭, 너비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바닥 구배시공을 하며, 준공 도면 및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욕실 출입 시문쪽에 의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됨. • 욕실, 주방, 보조주방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됨. • 본 공사시, 욕실 벽 타일은 타일접착제를 이용한 접착붙임공법으로 시공됨.
창호공사	•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창호의 색상, 프레임, 규격, 세부 하드웨어 등 제작업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 가스배관 및 드레인인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재질, 성능, 형태, 위치,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주동 공용부의 창호 위치는 옥탑장식물 등에 의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창호 유리 스펙은 현장 시공 시 풍압, 유리 구조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벽체 타일은 일반 모르타르 떠붙임 공법이 아닌 에폭시 접착 공법으로 시공됩니다. 이에 따라 타일 면을 두드릴 경우 일부 구간에서 공극음(빈 소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접착 공법 및 자재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기능 및 품질상 하자가 아닙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	• 단위세대 실외기 그릴창은 실외기의 환기 성능 확보를 위하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습식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 배수 드레인인 발코니 확장 옵션사항 적용에 의하여 위치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습식 발코니 및 화장실 PD내부에 우수 드레인이 설치가 되어 배관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 내·외부에 설치되는 창호는 삼중유리로 시공 예정임, 사업계획승인시 43t로 되었으나, 실시설계진행하며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실외기실 상부에 위치하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되거나 천장을 설치할 경우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 및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급수펌프(마목)	적용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에서 삭제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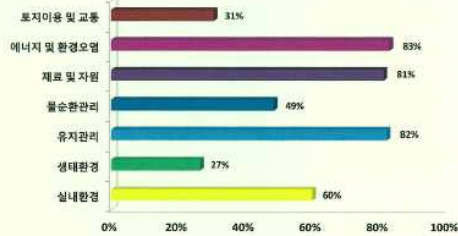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말미에로 광안	인증번호	G-SEED-P-2026-0405-7
건축주	매직이아파트연세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	유효기간	2026.04.21. ~ 사용승인일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인증 등급]	
층 수	지하 6층 / 지상 27층 / 366세대	인증등급	우수등급(공공주택)
면적	122,312.1168㎡ (평가면적: 120,315.9746㎡)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편의시설		국도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설 계 자	해성우씨엔지니어사무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종합등급 ★★☆☆



2026년 4월 21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부산 수영구 민락동 MBC 부지 개발사업 공공주택 신축공사	인증 번호	23-주-에-1-+-0061
준공연도	20280630	평가자	김도이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층 수	지하6층 / 지상27층	승인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122,312.1168㎡	추진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 계 자	(주)삼주씨엔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1++등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	단위	단위
난방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냉방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급탕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조명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환기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합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환경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조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치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부동산원



■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제 2024-1607-KP001 호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대상 건축물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mbc부지 개발사업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인증등급 : 지능형건축물 4등급

건축환경분야	5.8점
기제설비분야	8.0점
전기설비분야	7.8점
정보통신분야	16.2점
시스템통합분야	17.2점
시설경영관리분야	17.2점
총 점	72.2점

백분율 72.20%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정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4등급 지능형건축물로 지정되었기에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81,490,550,000원	제 01282026-101-0004800 호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임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임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택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자금관리업무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유)광진이엔지	(주)동남엠이씨	(주)건일씨엠
감리금액	4,006,497,000원	594,186,999원	121,295,235원	173,8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주)하이하트이앤씨	(주)금강주택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4층 5호(역삼동, 금강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19~21층 (대치동, 금강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4486951	110111-0313314

※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주)하이하트이앤씨이며, 분양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하나자산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의

명칭은 ㈜하이아트이앤씨의 자금관리업무수탁사인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현장	갤러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50-2번지
알티에로광안 홈페이지	분양문의
https://알티에로광안.com	1800-0366 (10:00 ~ 17: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에 우선합니다.)